

제295회  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20. 5. 25.

**서울특별시교육청**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**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**

- 동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2015.7.24.에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법률13428호)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동 감채기금이 사실상 운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남아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.

□ **관련 법규는**

-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” 고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제2항입니다.

□ **주요 내용은**

-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.

□ **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**